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제 2023-00293 호

2023. 2. 20.

수신 : 김정환 귀하

제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불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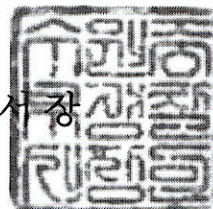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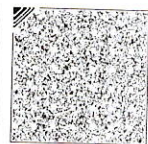
접수일시	2022. 11. 8.	사건번호	2022-009276
죄명	사기		
결정일	2023. 2. 20.		
결정종류	불송치(혐의없음)		
이유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수사1과 경제범죄수사6팀 경위 이효상	☎	031-299-5305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경기수원중부경찰서장





【별지】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1.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21. 5. 21.경 고소인에게 “보증금 50만 원을 낸 뒤 1년간 매달 723,000원씩 대여료를 내면 1년 뒤 이륜자동차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1. 5.경부터 2022. 5.경까지 보증금 50만 원과 1년 치 대여료 8,676,000원 등 총 9,176,000원을 교부받아 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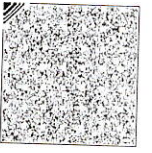
2. 불송치 이유

○ ‘지니바이크’라는 이륜자동차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가 2021. 5. 21.경 배달대행업체인 ‘에스런’에서 배달대행 일을 하는 고소인에게 “보증금 50만 원을 낸 뒤 1년간 매달 723,000원씩 대여료를 내면 1년 뒤 이륜자동차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지니바이크’의 동업자인 김OO 명의의 위 이륜자동차를 고소인에게 대여해주고, 고소인으로부터 2021. 5.경 보증금 50만 원과 월 대여료 72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경까지 보증금 50만 원과 1년 치 대여료 8,676,000원 등 총 9,176,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고소인에게 위 이륜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은 위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의자로부터 이륜자동차를 대여하고 피의자에게 2021. 5.경부터 2022. 5.경까지 보증금과 1년 치 대여료 등 총 9,17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의자가 이륜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았다고 피의자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약속한 조건 대로 이륜자동차의 명의를 고소인에게 이전해주려고 하였는데 ‘지니바이크’의 동업자 김OO과의 동업 관계가 틀어져 동업자 김OO이 이륜자동차의 명의를 계약자들에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해주지 않아 고소인에게 이륜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주지 못하게 되었다며 혐의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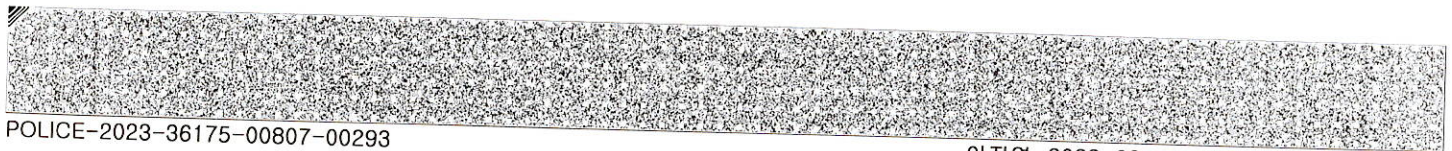


한다.

○ 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건에서 작성된 '지니바이크' 직원인 참고인 이OO에 대한 진술조서 등의 수사서류가 위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 피의자가 위 주장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지니바이크' 직원인 참고인 이OO의 진술이 위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동업자인 김동현과의 동업 관계가 틀어지면서 김동현이 이륜자동차의 명의를 계약자들에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해주지 않아 고소인에게 이륜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김동현 명의의 이륜자동차들에 대한 사용폐지신고서들을 위조하면서까지 고소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계약자들에게 이륜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고소인과 계약할 당시 고소인에게 위 이륜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 외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심의신청 방법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의·심의신청 방법>

-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고발인은 제외)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